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입소 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 본인부담금 구간이 달라지는 등급변경,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에는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인당 수가에 의해 자동 갱신 되며, 그 외 개인이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받는 상급침실이용료 월 10만원과, 1식당(2,500원), 간식 1일당 670원 등이 있으며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비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권리**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각종 정보나 내용 교육 전달 받을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하고, 면회 및 외출 외박의 신청 및 상담 신청의 권리 ③ 수급자 욕구에 대해 대변하고 이를 확인 열람 동의할 권리 ④ 수급자의 신변이상, 응급상황시 즉시 알권리(응급상황 지정 병원 등) ⑤ 수급자 생활개선에 대해 수양원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⑥ 수급자 제재나 응급상황 치료법에 대해 요청, 자문시 동의 및 거부할 권리 ⑦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목적)에 대해 알고 거부나 동의 할 수 있는 권리 ⑧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요청할 권리 ⑨ 매월 급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를 수신, 열람할 권리 ⑩ 수급자 열반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인수의 권리 나. **의무** ①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의 본인부담금, 촉탁의 진료비용, 식비 등 비급여에 대하여 입소인 연대,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 유고시 신원을 인수 ② 개인물품 구입과 개인요청으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따른 실비는 개인이 지출 ③ 원내 애완동물 사육금지,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규칙준수 ④ 인적사항(주소, 이메일, 연락처)이나 신원인수인의 자격상실시 통보 ⑤ 수양원 생활규칙 위반 시 책임과 수양원 기물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 ⑥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인의 수급자 치료방안에 숙고할 의무 ⑦ 입원, 질병,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간병인비, 기저귀)와 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염병 검사 비용을 지급 ⑧ 수급자 열반 시 신변처리(장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장기 부재로 인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5.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6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8.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 ②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상급병실이용료 등)을 말한다.
- ③ 입소비용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 ④ 이용료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시설이 정하고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비용이 변경될 경우 시설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입소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수양원에서는 입소자의 건강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 1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케어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
 2. 여가·치매 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지역사회행사 참여 프로그램 제공
 3. 입소자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물리치료, 운동치료, ADL 등)을 제공한다.
 4. 입소자의 감염병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월 2회 이상 촉탁의를 두어 진료케 하여야 한다.
 5. 기타 수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세탁물관리-위생원, 시설관리-관리인 등)
- ② 출장 이·미용 등 입소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출장이나, 외출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의 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자원봉사 성격으로 수양원에 와서 진행하는 이미용 등 서비스의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 및 비용

1. 임종, 감염병, 기타 격리 보호 등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소자(보호자)와 상의하여 특별침실에서 격리 보호한다. 특별침실을 이용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의사의 출장에 의한 처방이나 그에 따른 의료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에 감염(보균) 되었거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치료 및 입원 시 발생 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의료(외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먼저 보호자와 의논 후 의사의 오더에 의해 약물(재활)치료 등 시설에서 가능한 치료는 시설에서 실시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입소자(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선택한 의료시설(시설협약병원 등)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락 후 보호자 의사를 따라 병원을 정해 치료하며, 연락 불통 시 응급병원으로 선 이송 조치한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간병비, 병원 용품비 등)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거실의 출입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

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이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장기간 부재 입소인이 거실에 3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원상회복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사용상의 주의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용도의 제한 -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수양원은 원내(정원 및 마당 포함)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외출시 수양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며 기타,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외박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수양원은 일체의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사각지대에서 불시에 발생한) 것을 제외한 사고의 경우 수양원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보험 합의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서명)	등 급 (인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일반			
제공자 (을)	시설명	관촌원광수양원	시설종류	노인요양(현행법)	
	시설장 성명	(인)	연락처	063) 643-6683	
	주 소	(55907) 임실군 관촌면 공덕1길 39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서명)	관 계	갑'의 자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HP	
	주 소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2025-01-15 일부터 2026-11-28 일까지로 한다.
- ② 본 계약은 장기요양위원회나 등급변경에 따른 수가(의료수가포함) 및 자격변동, 본인부담을 변경시에도 자동 연동 되어 유효하며, 1항의 기간 역시 갑의 등급갱신에 따른 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 변경 되는 것으로 하며, 비급여 금액변경(특실비용, 식대)시에만 재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한다.
-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등외로 하향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을은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갑(병)에게 전달하되 비급여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변경된 금액과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인정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5년 2월 10일 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매월10일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③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외
요양급여	노인요양(현행법)	90,450원	83,910원	79,240원	79,240원	79,240원	79,24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100,000원					
	식재료비 (1식)	2,500원					
	간식비 (1회)	67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감경12%	12%	
감경8%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7.5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5등급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요양급여비용)		2,377,2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901,760	
	요양급여비용(80%)	1,901,760	79,240원 *30일*80%= 1,901,760원
개인부담 비용	소 계	720,540	
	요양급여비용(20%)	475,440	79,240원 *30일*20%= 475,440원
	식사재료비/간식비	245,100	식재료비 2,500원*3식*30일=225,000원 간식비 670원*1회*30일=20,100원
	상급침실 이용료	-	2인실 100,000원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 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 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촉탁의 진료비, 연1회 감염병 검사비 등)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및 계약서, 각종 동의서(제재,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서명

② ‘을’ 의 의무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 의 의무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월 이용료 등 각종 비용 부담
2. ‘갑’ 의 면회(가족지지), 보호자 회의 참여 등의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하여 을에게 통보
4. 외래, 입원시 병원동행 및 의료 보호자 역할 담당
5. 열반시 신원인수인의 역할 및 계약서, 각종 동의서(제재,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서명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 의 해지

1. ‘갑’ 과 ‘병’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 의 해지

1.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간식, 보약 등)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촉탁의 포함)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비, 기저귀 등 일반 생활용품비용 등)는 ‘갑’ 또는 ‘병’이 직접 납부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촉탁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후, 유산상속은 민법에 따른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1회)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매주 월요일)에 ‘갑’에게 을의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 영양실의 배정 】 ‘갑’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매월 1회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나 가족에게 제공하며 추가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은 내용과 관촌원광수양원 입퇴소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25년 1월 15일

(계약자) ‘갑’ 이용자

(서명)

‘을’ 시설장

(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서명)

계약자(갑또는을)은 입소계약에 관련하여 계약내용을 충분히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았습니다.

확인
서명

(서명)